# 신탁계약 세부내역

(은행보관용)

위탁자 계약체결을	 증명ō	 하기 위하여 [		와 수탁자 주식호 역을 작성합니다. 앞면의 특	회사 부산은행은 특정금전 정금전신탁 계약서를 빈	I .	계 책임자	
확인하시기			세부니			L		
신탁계약일			계좌빈					
유언대용계	계약 여	부 🗌 0:	i □부	유언대용신탁 계약번호				
계약서 근거		구	분	계 약 내 용				
제 2 조 신		신트	·금액	∃ (₩ )				
제 3 조	=	신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탁원본교부일: 년 월 일)				
제 4 조	_	수 의 자	원본수익자	주소 성명 생년	월일(사업자번호)		(인)	
	_	T ¬ XI	이익수익자		월일(사업자번호)		(인)	
제 7 조	-	운용내역 통 보	운용 내역 통보 여부	□ 통보를 원함 □ 자틱 위탁자		편 (인)		
	-		및 통지 방법	□ 통보 생략 위탁자	:	(인)		
제 12 조	=	신탁보수율	기본 보수	□ 신탁원본 평균잔액×연	( )% □ 최초	신탁원본×(	)%	
제13조 이익계산 및 지급 제15조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일로부터 ( )년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 ) 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 ) 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해지원본의 ( )					
제16조		만기 후 기본보수		(만기 후 신탁원본 평균잔액 또는 최초신탁원본)×연 0.4%				
				수익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낮은 기본보수율을 만기 후에도 조				
[별표1] 신 탁 자 글 운 용 방 밭 주) 상기 신탁자	(2) (3) (4) (5) (6)	대출금 콜론 할매조건부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기타금용채 방법(1. 내지 30.0	① 외화 ① 보증 ② 자유	(1) 중개어음 (2) 주식형수익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발행어음 (2) 기타의 증권 (2) 파생결합사채 (3) 중권 (3) 양도성예금증서 (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2) ETF				
f = -2	귀	행과의 특정금	극전신탁계약0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별표2] 특 정	신	탁자금 운용	방법 (별표1)	세부내용 (종목명, 자산만	기일) 위험등급	비중	고객확인	
금 전 신 트 운용지시사							(인)	
주) 신탁자금 운	용방법[	별표1]중에서 세	부적으로 운용 지서	할 때에는 그 내용을「세부내용」란(	ll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단계이상 & 보여부 (SM)	하락 등 중요 S 또는 우편)	□ 통보를	릉 원함 □ 통보 생략		(인)	
위탁자	생년울	일일(사업자번	·[호) :	수탁자	J			
	성명 :	:		(인)	(주)부산은행		(인)	
			판(	H <b>직원</b> <u>직 위:</u>	성 명:		(인)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 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하다.

### [제 2 조] (신탁금액)

- ① 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 [제 3 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 계약의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 만료일을 통 지하여야 하고 통지 시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 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 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 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4 조] (수익자)

-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세부내역에
- 기재된 자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 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
-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를 수익자로 본다.

###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 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 아 아니는 구국사인 등 3 사이에 되었다. 다음 내어 있다. 다음 다녀, 자금 다녀, 자금 다녀, 자금 당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 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동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
- 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 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 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⑤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다.
- ⑥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별도
- 운용자시가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운용한다. ①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 6 조] (대리인의 지정)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
- 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운용내역 통보 등)

- ①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 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 게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신탁계약세부내역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위탁 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 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 8 조] (법적절차)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 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제 9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제 10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 게 귀속된다.

# ※ 이 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 11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 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 [제 12 조] (신탁 보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보수율 표에 의하여 계산 된 신탁보수를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가.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나. [최 초 신 탁 원 본 × 연(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 신탁기간동안 신탁원본 누적값 / 신탁기간(일수)
- ② 신탁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반영하여 계산한 신탁금액을 말한다
  - 1. 제2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중 추가하 신탁금액 은 가산
  - 2. 제13조에 의한 이익 계산 금액은 신탁원본에 가산 또 느 차간
- 3.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금액은 차감 ③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기본보
- 수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보수율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
- 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13 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 여 신탁원본에 가감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1.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윌이 경과한 날
  -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 원 본을 지급하는 날
  - 4. 신탁기간 만료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분기말 5. 기타 (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 까지로 하다.

### [제 14 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 [제 15 조] (중도해지)

-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 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 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2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 ) 미만 경과 시 - 신탁계약일로부터(
  -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 해지신탁원본의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아
  - 니하여 해지 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
- 정하 경우 ⑤ 제3조제4항의 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 우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 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 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 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시까지의 기 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 [제 16 조] (신탁계약인 종류사유)

-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1. 선택기단에 필요된 영무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 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 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 후의 기본보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여 정하다.
- ③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우 수탁자는 최 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 자는 계산증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 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언어부를 두럭차에게 동시하더라 된다. 중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송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송인을 요구받 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 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⑧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 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 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 ⑨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 수시기를 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 한 될 수 있다.
- 전 될 수 있다.①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 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 [제 19 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해 변경예정일 20일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선배세를 통해 반성배성을 *있*할신에 미지 또는 게시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
- 전당 전 대용에 그대로 작용되는 영주 포는 취속사가 된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
- 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 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증서 · 거래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변경하 고자 할 때
-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 명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 에 변동이 있을 때

### [제 21 조] (인감신고)

에 달 그 기간을 보고 가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2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23 조] (준용) 이 신탁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24 조] (관합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 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

# 신탁계약 세부내역

(고객보관용)

위탁자 계약체결을	증명하	기 위하여 [	나음의 세부L	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특정금전신탁 내역을 작성합니다. 앞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계 책임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신탁계약일 유언대용기	1101: 111	<u> </u>	<b>계좌</b>  1 □부	번호 						
계약서 근		F 니 () 	+ □ ㅜ  분	계 약 내 용						
				게 꼭 내 ㅎ						
제 2 조		신탁금액		(₩						
제 3 조	=	신탁기간		(신탁원본교부일: 년 월	까지 일)					
제 4 조	-	수 익 자	원본수익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u>O</u> I)					
	_		이익수익자	주소 성명 생년윌일(사업자번호)	(01)					
제 7 조	_	운용내역 통 보	운용 내역 통보 여부	□ 통보를 원함 □ 자택우편 □ 직장우편 위탁자 : (인)						
			및 통지 방법	□ 통보 생략 위탁자 : (인)						
제 12 조	=	신탁보수율	기본 보수	□ 신탁원본 평균잔액×연( )% □ 최초신탁원	본×( )%					
제13조 이익계산 및 지급										
제15조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일로부터( )년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 계약일로부터( )이상( )미만 경과시 해지원본의( 계약일로부터( )이상 경과 시 해지원본의( )	)					
제16조		만기 후 기본보수		(만기 후 신탁원본 평균잔액 또는 최초신탁원본)×연 0.4%						
				익수익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낮은 기본보수율을 만기 후에도 적용합니다.						
[별표1]         ① 대출금         ② 지방채         ③ 표지어음         ⑨ 공사채형수익증권         ⑤ 단기사채           ② 콜론         ⑧ 사채         ⑩ 중개어음         ⑩ 주식형수익증권         ⑩ 파생결합증권           ③ 할매조건부채권         ⑩ 주식         ⑪ 방행어음         ⑩ 기타의 증권         ⑩ 파생결합사채           ④ 국채         ⑪ 외화증권         ⑩ 양도성예금증서         ⑩ 부동산의 매일 및 개발         ⑱ ETF           ⑤ 통화안정증권         ⑪ 보증어음         ⑩ 신용카드채권         ⑳ 증권지수의 선물거래         ⑳ 산태및사태합測병에서 전환           준) 상기 신탁자금운용방법(1, 내지 30.에서 정한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형	행과의 특정금	금전신탁계약	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별표2] 특 점	신택	탁자금 운용	방법 (별표1)	세부내용 (종목명, 자산만기일 ) 위험등급	비중 고객확인					
금 전 신 트 운용지시사	탁				(인)					
주) 신탁자금 운	용방법[발	열표1]중에서 세	부적으로 운용 지	시할 때에는 그 내용을「세부내용」란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JCt.					
자산의 신용등급 2단계이상 하락 등 중요 사항 변동내역 통보여부 (SMS 또는 우편)				□ 통보를 원함 □ 통보 생략	(인)					
위탁자		!일(사업자번	· (호) :	수탁자	/ON					
	성명 :			(인) (주)부산은행	(인)					
			핀	매직원 <u>직 위:</u> 성명:	(인)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 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하다.

### [제 2 조] (신탁금액)

- ① 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 [제 3 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 계약의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 만료일을 통 지하여야 하고 통지 시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 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 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 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 4 조] (수익자)

-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세부내역에
- 기재된 자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 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
-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를 수익자로 본다.

###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 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 아 아니는 구국사인 등 3 사이에 되었다. 다음 내어 있다. 다음 다녀, 자금 다녀, 자금 다녀, 자금 당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 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동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
- 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 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 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⑤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다.
- ⑥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별도
- 운용자시가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운용한다. ①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 6 조] (대리인의 지정)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
- 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운용내역 통보 등)

- ①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 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 게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신탁계약세부내역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위탁 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 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 8 조] (법적절차)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 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제 9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제 10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 게 귀속된다.

# ※ 이 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 11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 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 [제 12 조] (신탁 보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보수율 표에 의하여 계산 된 신탁보수를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가.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나. [최 초 신 탁 원 본 × 연(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 신탁기간동안 신탁원본 누적값 / 신탁기간(일수)
- ② 신탁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반영하여 계산한 신탁금액을 말한다
  - 1. 제2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중 추가하 신탁금액 은 가산
  - 2. 제13조에 의한 이익 계산 금액은 신탁원본에 가산 또 느 차간
- 3.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금액은 차감 ③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기본보
- 수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보수율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
- 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13 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 여 신탁원본에 가감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1.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윌이 경과한 날
  -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 원 본을 지급하는 날
  - 4. 신탁기간 만료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분기말 5. 기타 (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 까지로 하다.

### [제 14 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 [제 15 조] (중도해지)

-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 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 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2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 ) 미만 경과 시 - 신탁계약일로부터(
  -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 해지신탁원본의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아
  - 니하여 해지 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
- 정하 경우 ⑤ 제3조제4항의 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 우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 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 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 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시까지의 기 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 [제 16 조] (신탁계약인 종류사유)

-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1. 선택기단에 필요된 영무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 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 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 후의 기본보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여 정하다.
- ③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우 수탁자는 최 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 자는 계산증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 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언어부를 두럭차에게 동시하더라 된다. 중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송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송인을 요구받 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 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⑧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 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 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 ⑨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 수시기를 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 한 될 수 있다.
- 전 될 수 있다.①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 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 [제 19 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해 변경예정일 20일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선배세를 통해 반성배성을 *있*할신에 미지 또는 게시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
- 전당 전 대용에 그대로 작용되는 영주 포는 취속사가 된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
- 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 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증서 · 거래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변경하 고자 할 때
-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 명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 에 변동이 있을 때

### [제 21 조] (인감신고)

에 달 그 기간을 보고 가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2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 23 조] (준용) 이 신탁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24 조] (관합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 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